

월요광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상 먼
광주대 교수

새해를 맞은 지 여러 날 지났지만 오랜만에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지인들에게 여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한다. 아마도 구경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무수히 오가는 새해 인사를 보면서 ‘상대방이 진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인사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인사를 받는 만큼 복을 진짜 받는다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이렇게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

의례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인사가 많다는 얘기가. 그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연하장을 보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국 경제학자 존 로스킨은 저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라는 책에서 각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기

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돈을 적게 벌도록 주장하는 기교도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타인과의 경쟁이나 비교를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벌여주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특히 가까운 이웃의 불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구성원을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즉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명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항상 이기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타적인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이 300년 역사 동안 전제로 삼은 이기적 인간이라는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기적 인간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무한 확대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금의 인류사회에 양극화, 고실업 등의 질곡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는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기적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서로 협조하여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비

합리적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연대와 호혜를 기본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기적 인간이 아닌 호모 리시프로칸(Homo Reciprocan) 즉 상호적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 상호적 인간은 호혜적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약에는 악으로 대하고, 선에는 선으로 대응한다.

오랫동안 신자유주의에 세뇌당한 현대인들이 사회적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갑이 을에게 재화를 건네는데, 그 대가를 치르면 교환이고 대가가 없다면 기부다. 시장경제 방식에는 교환과 기부라는 두 가지 거래방식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는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갑이 을에게 재화를 건네면서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나, 그 대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사회적 경제의 호혜적 순환원리에 의한 거래로서 을이 받은 것을 병에게 갚는다는 조건을 붙인 거래다. 또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갑 자신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서로 돕고 협조하며 이웃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어떤 동네 아저씨는 자기

이익을 약삭같이 따지고 살기 보다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적당히 만족하고 웃으며 살아간다. 옆집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뒷산에 오르며 휴지, 비닐, 깡통을 자루에 담아 내려온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본래 모습은 상호적 인간에 가깝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타성이 이기성을 충분히 통제하고, 호혜와 협동의 원리가 무한 경쟁의 원리를 압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타인의 이익이 자신의 손해가 아니며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못 가질 복은 사실상 없다. 남이 부자가 된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의 삶 속에는 경쟁과 비교라는 것대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도 건강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건강해야 하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앞으로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보자. 그러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온다. 우리 서로 행복해야 하기에, 이전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 행복해지도록 진심 어린 축복을 유통시키자.

우리의 명절 설이 다가온다. 간절히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해보자. 2015년 올미년 청양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조칼럼

피고인에 대한 소송 비용의 부담



김 은 형
광주지검 검사

광주지검에 부임하여 공판 업무를 담당한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다. 최근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재판과 더불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고 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유턴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사건이었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피해차량 블랙박

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고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이런 주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약 2년 9개월의 시간의 소요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제186조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형의 선고에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1조에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재판이 선고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을 제2조는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재판에서처럼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거에 비추어 범죄성립이 명백함에

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재판지연으로 인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사례 방지,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대책으로 소송비용부담의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기 고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 아동에게도 하지 말아야



김 재 춘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고 있다.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교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학대 행위자들은 ‘피해 아동이 귀여워서 장난한 것’이라고 말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또한, 최근 광주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아동부가 아동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사회적 정점이 되었다. 아동부는 아이들이 춤추는 모습이나 배달 음식을 먹

는 장면을 주로 방송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은 종종 새벽 늦은 시간까지 방송에 출연 된 적도 있고 아동부가 욕설하거나 음주하는 상황이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더욱이 아동부는 이러한 아동들의 방송출연으로 이익을 얻어 더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가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전화 또한 112로 통합되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365일 24시간 접수를 가능하게 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현장 동행 출동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른 24개 군의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어린이집 교사 포함)·의료인·시설종사자·사회복지공무원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아동학대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강원도 내 노 중학교 교사와 3명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후 신고접수 현황은 1391건으로 특례법 시행 1년 전 신고접수 896건과 비교하여 52.2% 증가, 한 달 전 1305건과 비교하여 6.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예전보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인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실천이 필요하다. 과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귀여워서’ 또는 ‘예뻐서’ 라며 했던 신체적 접촉은 이제 아동 본인이 느끼기에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아동들에게도 해서 안 되는 행동이다. 지나가는 어른에게 ‘귀여워서 장난한 것’이라며 성추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동에게도 똑같은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하여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피해 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아동과 아동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112로 신고해야 하며 상담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062-385-1391)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한 아이를 살리고 나아가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작은 실천이며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社 說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저속철’ 안 된다

오는 3월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KTX) 노선에서 광주역이 제외되고 서대전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를 중심으로 호남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역 이용객과 일대 공동화를 우려, 광주 승정역에 진입하는 호남고속철 일부를 광주역으로 되돌리는 스위치백(switchback) 방식을 요구해 왔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광주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호남고속철 서울-광주 승정 구간 가운데 오송-공주 구간은 오송-대전-서대전-공주 일반선으로 우회하는 계획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편수에서 20%는 당초 계획보다 45분이 추가 소요돼 서울-광주까지 기존 1시간 33분에서 2시간 18분으로 늘어나 ‘저속철’로 전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노선을 결정하고 3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

다. 우리는 호남고속철의 광주역 제외와 서대전역을 포함하는 국토부의 안이 광주시 등 호남권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광주역 제외는 시민의 불편 가중은 물론 교통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편수라도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호남선과 전라선을 운행하는 하루 82회(편도 기준)의 KTX 가운데 18회를 서대전역에 경유토록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서울-광주까지 45분이 늘어 2시간 18분이 소요된다면 이는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는 호남권 승객의 이용하지 않아 적지 않은 적자를 내고 민원 발생도 많아질 게 분명하다.

국토부는 광주역 제외와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아니라면 호남 지역민들의 거센 발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실질 방안 내놓아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원장·교사 영구 퇴출, CCTV 설치 의무화 등 고강도 방안을 추진하고 야야 정치권도 학대 근절특별위원회 발족 등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지역 학부모들도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며 지난 15일 하루 만에 1만 명이 CCTV 설치 온라인 서명을 하는 등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 시내 어린이집 보육실의 CCTV 설치율이 21.30%로 극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건이 터질 때만 부산을 떨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아동학대행위가 드러나 가해자나 시설에 대해 자격 취소, 해임, 보조금 중지 등 조치가 취해진 것이 3분의 2에 그쳤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맹목적이었고 처벌도 미약했다는 걸 보여준다.

일부에서 보육교사를 옹호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동폭력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인권이란 단어도 통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 학부모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문제는 임기응변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CCTV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급 7000여명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건이 터질 때만 부산을 떨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無 等 鼓

오늘날 전세계의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가 4등분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월 발간된 ‘국제선교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1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도가 33%인 23억5400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슬람교도가 22.9%인 16억3500만 명, 힌두교도가 13.8%인 9억8200만 명 그리고 불교도가 7.1%인 5억9000만 명이 다.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기독교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이슬람교도인 셈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인 우리 입장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잘 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2008년 이슬람교도의 비중은 19.2%였다. 불과 5년 사이 3.7%P나 더 늘어난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독교도가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도의 폭발적인 성장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독교도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두 종교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뿌리였던 유대교·기독교와 반목이 시작된 이후 수세기에 걸쳐 서방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